

축산물작업장 HACCP 제도 적용에 대하여

김 용 상

농림부 축산위생과

글을 시작하며

농림부는 식육, 원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과 같은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이다.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식육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EU 등 대부분의 선진 국에서 법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국제교역되는 식품의 생산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에 대해 농림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향후 무엇을 할 것 인지를 밝힘으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소비자들에 공급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려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해를 돋고 국민들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조금이라도 넓히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농림부 담당 축산식품

- ▣ **식 육**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
- ▣ **원 유** :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상태의 우유(牛乳)와 양유(洋乳)
- ▣ **식육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식육, 양념육류, 포장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 ▣ **유 가 공 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 **알 가 공 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HACCP 제도 실시의 배경은?

축산식품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식품에 혼입되거나 축산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HACCP 제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등)에 의거 우선적으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적용토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축산물작업장에 적용되는 HACCP 제도의 세부내용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고시에 의거 도축장은 2000. 7. 1부터 2003. 7. 1까지 도축장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차등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축산물가공장은 HACCP 제도의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계자율로 적용하고 이를 업소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HACCP 실시업소로 정부가 지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97.12.13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98. 6.14 이후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따라 그간 보건복지부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복지부고시 제98-61호; '98.5.30)에 적용을 받던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HACCP제도 관리업무를 농림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WTO 협정에 의거 식품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93년부터 축산식품등 식품의 국제교역시 HACCP제도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국제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회원국이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국으로 수출되는 축산식품의 생산과정에 HACCP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1998. 2.26 이후, 일본은 2002. 4 이후

자국으로 수출되는 제 3국산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HACCP 제도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농림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① 도축장내 HACCP 적용모델 개발

농림부는 도축장에 HACCP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 도축업계를 실질적으로 돋기 위하여 '97 ~'98년간 소, 돼지, 닭 도축장에 대한 한국형 HACCP 제도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축장에 HACCP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축장별로 "HACCP 관리기준"이라 불리는 자체적인 HACCP 적용계획(Plan)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동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개발이 도축장 스스로 하기에는 HACCP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시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이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 연구 결과는 금년 초에 나올 것이다. 농림부는 동 연구결과를 근거로 개발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HACCP 모델을 전국 도축장에 보급할 계획이며, 이는 동제도가 도축장에 조속히 뿐만 내리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② 축산식품 HACCP 고시 제정 공포

농림부는 HACCP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HACCP 제도의 적용대상 작업장, 작업장별 적용시기 및 적용품목, HACCP 관리기준, HACCP 제도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동제도관련 HACCP 교육, HACCP 제도와 정부위생당국의 역할,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1998-19호:

'98. 8.10)을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98.12 기준으로 동고시에 의거 HACCP 제도 실시하는 축산물작업장으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작업장은 식육가공장 3개소 및 유가공장 26개소이다.

③ 도축장내 HACCP 적용을 위한 실무작업반(Task Force) 구성 운영

농림부는 식육의 원료생산, 도축, 가공, 유통의 단계를 검토한 결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생상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며, 대부분의 오염근원이 되는 도축단계에 HACCP 제도가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98.10 농림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HACCP 업무담당자와 도축장의 위생관리책임자 등 35명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내에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98.10부터 '99. 6까지 9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동작업반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정부기관, 관련단체, 축산물작업장 및 소비자 등 동제도의 운영에 관련되는 각 분야가 도축장내 HACCP 제도 적용이 의무화되는 2000. 7. 1 까지 HACCP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자료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HACCP 제도를 일선에서 이끌고 나아가야 할 HACCP 관련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함으로써 이들의 HACCP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운용능력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 더불어 동작업반은 HACCP 제도를 도축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도축장 영업자 종업원, 시·도 축산물검사원, 자체검

사원, 검사보조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동제도 교육 홍보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동작업반은 축산식품 HACCP 고시 해설서, HACCP 질의·응답 자료, 식육위생관련 HACCP, ISO 9000, GMP, SSOP, KS 규격, TQC 등 각종 위생관리시스템을 정리하고 이들간의 유사성 차이점 및 상호연관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만들었고, 도축장내 HACCP 적용시 일반적인 위해(hazards) 및 이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기초자료 등을 마련하여 이들을 관련분야에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④ HACCP 제도 교육 홍보 실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장에 HACCP 제도가 도입되어 2000. 7. 1부터 연차적으로 차등 적용되나, 사실 아직까지 도축장의 영업자 종업원, 축산물검사원, 자체검사원, 검사보조원 등 식육업계 종사자들이 동제도에 대한 공감대 및 이해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동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들에게 농림부의 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수준 제고대책, HACCP 고시, 농림부 HACCP 제도 정책 등과 같은 HACCP 제도관련 제반내용에 관한 교육 홍보를 '98.12.17 ~18(2일간) 실시하였는데, 본 교육에는 약 320 명의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속에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는 동제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농림부는 HACCP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정책내용을 인터넷 농림부 홈페이지(주소는 <http://www.maf.go.kr>)의 "열린농정"편을 통하여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바란다.



HACCP 고시 주요내용은?

① 적용대상작업장 및 적용시기

도축장의 경우 적용대상은 1일 평균도축실적(전년도 기준)(축산물종합처리장 또는 닭계열화도축장은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적용품목)	1일 평균 도축실적	시행 시기	비고
소 도축장	100두이상 또는 정부지원 축산물종합처리장	2000년 7월 1일부터	도서지역 제외
	50~100두미만	2001년 7월 1일부터	
	30~50두미만	2002년 7월 1일부터	
	30두미만	2003년 7월 1일부터	
돼지 도축장	1,000두이상 또는 정부지원 축산물종합처리장	2000년 7월 1일부터	도서지역 제외
	500~1,000두미만	2001년 7월 1일부터	
	300~500두미만	2002년 7월 1일부터	
	300두미만	2003년 7월 1일부터	
닭 도축장	100천수이상 또는 정부지원 계열화업체	2000년 7월 1일부터	도서지역 제외
	50천수~100천수미만	2001년 7월 1일부터	
	30천수~50천수미만	2002년 7월 1일부터	
	30천수미만	2003년 7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장의 경우는 영업자가 농림부 고시에 의한 HACCP 제도의 적용을 희망하는 작업장에 한하여 업계자율로 하며, 적용품목은 우선 HACCP 실시상황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식육가공장(햄류, 소시지류) 및 유가공장(우유 발효유 자연치즈 가공치즈)로 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식품 수출작업장의 경우에는 수출상 대국 정부 또는 수입자로부터 HACCP 적용요구가 있을 경우 HACCP제도의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HACCP 체계 개괄

본 고시는 기본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HACCP 적용지침, 미국 및 일본의

HACCP 제도 관련규정, 그리고 보건복지부 HACCP 고시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다.

본 고시는 HACCP 제도의 7대 원칙 등에 충실하고 있으며, HACCP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물가공장을 HACCP 적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간 운용하던 식품 HACCP 고시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에 적용하는 HACCP 제도 적용방안중 가장 큰 차이점은 동제도의 강제 적용 여부이다. 즉 도축장은 강제적용이고, 축산물가공장은 업계자율적용인 점이다.

도축장에 동제도를 강제적용하는 이유는 —————

첫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을 생산하기 위해

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도축단계로 알려져 있으며,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의 성공여부가 식육의 위생 및 안전성을 보증하는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둘째,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도축장에 대하여는 HACCP 체계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셋째,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축장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HACCP 제도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축산물가공장은 동제도의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자율적용하는 이유는 ——————

첫째, 축산물가공장의 경우는 이미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HACCP 체계를 의무적용하지 않고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고 그 결과 육가공장 3개 업소, 유가공장 26개 업소가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되어 왔고,

둘째, 일반 축산물가공장들이 이러한 정책에 근거하여 HACCP 제도의 적용을 준비하여 왔기 때문에 설사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제도 적용등 위생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었다하더라도 정부의 업무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그리고 갑자기 동제도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관련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유지하였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셋째, 축산물가공장은 그 업체수가 무척 많고 그 수준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되게 HACCP 체계를 강제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농림부의 HACCP 제도 추진일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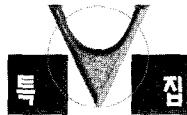
① HACCP 실무작업반을 통한 동제도의 효율적 적용 토대 마련

본 작업반은 HACCP 실태점검표를 통한 도축장별 위생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도축장의 HACCP 적용능력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작업장별 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지침” 및 “작업장별 HACCP 관리기준서 작성지침” 등을 만들어 축산물작업장에 공급함하고, 더불어 지난 2년간의 한국형 HACCP 모델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도축장 HACCP 적용모델 마련 후 이를 도축장에 제공함으로써 도축장이 동제도를 준비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HACCP 제도에 근거한 정부의 효율적 위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축장내 HACCP 체계의 효율적 적용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무요령”, “검사원의 HACCP 체계에 근거한 위생 질병검사 실무지침” 그리고 “작업장에서 HACCP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원이 취해야 할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정부위생당국의 HACCP 관련 위생 업무에 기본자료로 삼고자 한다.

② 세부 추진일정

도축장은 “도축장 HACCP 실무작업반”을 통하여 도축장에서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부터는 2000. 7. 1부터 HACCP 제도의 적용이 의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여개 도축장에 대한 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



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축산물가공장은 농림부고시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거 HACCP 적용업소 지정여청이 있을 경우 신청작업장의 HACCP 제도 적용실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내에 구성되어 있는 “HACCP 적용실사반”을 통하여 실태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최종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③ HACCP 체계 교육 홍보

‘99년 상반기에 농림부 주관으로 1~2회의 교육홍보를 계획중이며, 하반기 부터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HACCP 제도 교육기관을 통하여 축산물작업장 경영자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HACCP 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글을 맛으며

본인은 지금까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식품위생관리기법이라고 알려진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개괄하여 보았다.

이제는 축산식품의 생산시 HACCP 제도의 적용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도 일본에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등 축산식품의 대외수출을 강력히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동제도의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제흐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HACCP 체계의 세부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인식이 관련업계내에서도 상호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절대 적용할 수 없는 위생관리기법이라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HACCP 제도는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축산식품위생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전능한 수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HACCP체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정도는 바로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HACCP 제도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국내 축산물작업장에서 HACCP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는 도축장에서 동 제도의 성공적 적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의 HACCP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축장내 HACCP 적용을 위한 실무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활발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본인의 이번 글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농림부가 HACCP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독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여 HACCP 제도에 관한 서로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